



## 보도자료

배 포	2020. 7. 3.(금)
담 당 과	마스크총괄반 수급지원팀
과 장	신 준 수 (☎043-719-3302)
서 기 관	유대규(☎043-719-3316)

## 7월 3일 마스크 공적판매 수급상황 발표

오늘 총 682만 6천 개 공급

- 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이의경)는 **7월 3일 공적판매처**를 통해 공급 되는 **마스크 수급 상황을 발표**하였습니다.
  - 오늘(7.3)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682만 6천 개입니다.

(단위: 만 개)

구분	총계	일반 공급			우선 공급	
		약국	하나로마트	우체국	의료기관	정책목적*
7.3(금) 공급예정량	682.6	317.2	7	3.5	108.9	246

- \* 서울특별시 246만 개 공급
- 오늘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은 전국의 <sup>①</sup>약국과 <sup>②</sup>농협하나로 마트(서울·경기 제외), <sup>③</sup>우체국(대구·청도 및 읍·면 소재)입니다.
- □ 공적 마스크는 1주일에 1인 10개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.
  - **중복 구매 확인**을 위해 마스크를 구매할 때에는 **공인 신분증**을 **지참**(대리구매 시에는 대상에 따라 필요한 서류)하여야 합니다.
- □ 여름철 착용이 간편한 비말차단용 마스크 등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으나 생산량이 적어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.
  - 생산량이 확대되기까지는 어린이·노약자·임산부와 같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양보하고,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돌보는 경우에는 KF94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드립니다.

- 1 -







- □ 마스크 사용 시에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손 소독제로 닦고,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고 코와 입을 반드시 가리도록 하며,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.
- <첨부> 1.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대상 및 지참 서류
  - 2. 비말차단용 마스크 사용 안내







##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대상 및 지참 서류

대리구매 대상자	대리구매자	지참 서류		
<ul><li>● 모든 가족(동거인)</li></ul>	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	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②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(동거 확인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(가족 확인)		
❷ 장애인	제한 없음	① 구매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(장애인복지카드) 또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 * 장애인등록증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구매대상자의 공인신분증 함께 제시		
❸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	제한 없음	① 구매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상이(장애) 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또는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		
4 요양병원 환자	요양병원 종사자	① 해당 요양병원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 증명서(해당 요양병원장 발급) ② 해당 요양병원 환자의 공적마스크 구매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(해당 요양병원장 발급)		
<b>⑤</b>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	요양시설 종사자	① 해당 요양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(해당 요양시설장 발급) ② 해당 요양시설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서		

\* (외국인)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대신 '외국인등록사실증명'을 마스크 판매처에 제시하면, 동거 가족(대리구매 대상자)의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













